

한빛사랑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개요

기관명	한빛사랑주간보호센터	지정일자	2024.03.01
		연락처	042-582-8870 042-582-8871(FAX)
소재지	대전광역시 중구 사정공원로 289 (산성동)		
사업종류	주간보호	대상자	장기요양인정 1등급 ~ 5등급, 인지지원등급
	방문요양		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~ 5등급

이용정원	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39명이며, 「노인복지법시행규칙」에 따라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.
------	---

모집방법	기관 홈페이지, 장기요양 관련 홈페이지, 인터넷 홍보 등을 활용
	홍보물 배부, 병원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,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
	복지기관, 의료기관,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이용 상담 및 연계
	이용자 및 보호자 소개, 기관 방문 상담을 통한 이용 안내
배상책임	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(이하 “전문인 배상책임보험”이라 한다)에 가입 한다.

급여계약	<p>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</p> <p>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‘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’ (이하 “계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</p> <p>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,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. 1. 계약 당사자</p> <p>2. 계약기간</p> <p>3.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</p> <p>4.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</p> <p>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</p>
계약목적	계약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 하에 정하여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계약기간	<p>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</p> <p>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</p>

	<p>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</p> <p>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.</p> <p>⑤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</p>
계약해지	<p>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 전에는 구두로 센터에 전달해야 한다.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1.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</p> <p>2.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</p> <p>3.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</p> <p>4.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</p> <p>5. 이용자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</p> <p>6.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</p>
신원인수인 권리	<p>① 서비스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</p> <p>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</p> <p>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</p> <p>④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</p>
신원인수인 의무	<p>① 서비스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할 의무</p> <p>②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고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할 의무</p> <p>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의 의무</p> <p>④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의무</p> <p>⑤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시,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</p>
이용료	<p>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,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.</p> <p>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.</p> <p>③ 이용료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정한다.</p> <p>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.</p>
배상책임	<p>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(이하 “전문인 배상책임보험”이라 한다)에 가입 한다.</p>

◆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

운영규정 참조	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
------------	--------------